

## 「2025년 마산 자유무역지역 역량강화 기업지원사업」 추가 지원기업 모집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경남지역산업진흥원, (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2025년 자유무역지역 역량강화 기업지원사업」의 지원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4일  
(재)경남지역산업진흥원 원장

### 1 모집개요

- 공 고 명: 「2025년 마산 자유무역지역 역량강화 기업지원사업」 추가 지원기업 모집
- 사업목적: 마산자유무역지역에 특화된 기술·경영 전문가(닥터FTZ)의 진단 및 솔루션 지원을 통한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수출 활성화
- 지원대상: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지원기간: 2025. 8. ~ 2025. 11.(4개월)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2개 프로그램(성장지원 3,000천원 / 특화지원 5,000천원)
- 지원 내용

구 분	수 행 내 용	지원 개사	지원금(천원)	
			최대 지원금	기업 부담금
성장 지원	특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내·외 특허 출원, 상표, 디자인 출원</li><li>• 국내·외 특허 침해 및 선행기술 조사</li></ul>	3개사 내외	3,000	10% 이상
특화 지원	홍보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신시장개척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지원</li><li>• 외국어 홍보물(카탈로그, 동영상) 및 홈페이지 제작 등</li></ul>	1개사 내외	5,000	
	마케팅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경영, 투자, 마케팅, 판로 등 애로사항 해소 지원</li><li>• 시장분석, 법무, 회계 컨설팅 등</li></ul>	1개사 내외	5,000	
	특화품목 R&D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특화품목 맞춤형 전략 수립을 위한 R&amp;D 기획 컨설팅 지원</li><li>• 시장조사, 기술 개발, 정부 지원 활용</li></ul>	1개사 내외	5,000	
	장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공인기관 보유 장비 사용료 지원</li></ul>	5개사 내외	5,000	

- ※ ❶ 프로그램당 최대 지원금액 규모 안에서 신청 가능
- ❷ 성장지원 프로그램과 특화지원 프로그램 각 1개의 프로그램 신청 가능
- ❸ 예시) 성장지원(특허) 1건과 특화지원(장비지원) 1건, 총 2건 신청 가능  
특화지원(홍보물 제작, 특화품목 R&D 기획) 2건 신청 불가능

## 2 지원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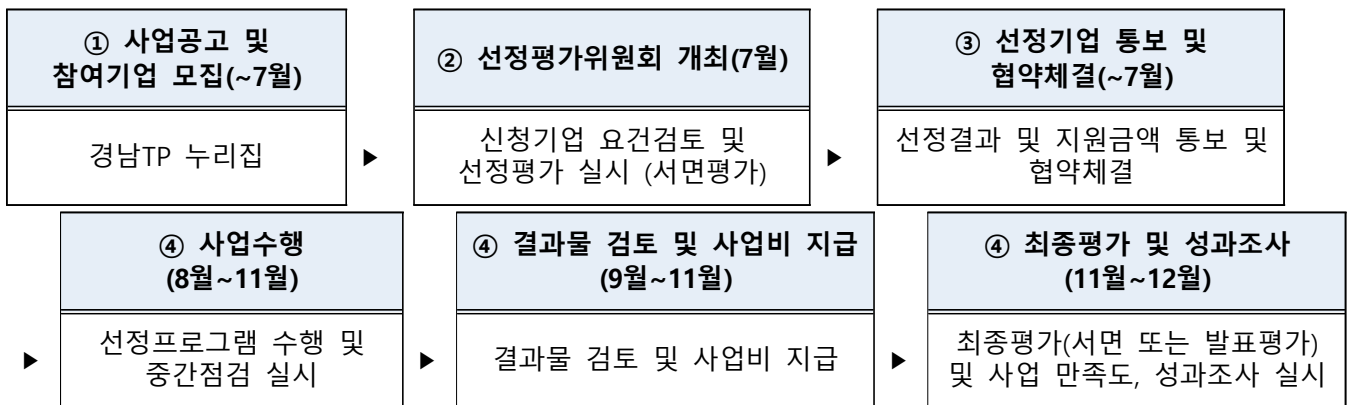
- 지원한도: 프로그램별 지원한도(부가세 제외)
- 기업 지원 프로그램 수행은 수혜기업이 원하는 공급기관을 통해 수행
- 정부지원금 지급 절차

구 분	주 체	비 고
정부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신청: 수혜기업 → 지원기관<sup>1)</sup></li> <li>• 지원금 지급: 지원기관 → 공급기업(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기업(관): 지원기업에서 선택</li> <li>• 지원한도: 프로그램별 지원한도(VAT 제외)</li> </ul>
부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업 → 공급기업(관)</li> </ul>	
기업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기업 → 공급기업(관)</li> </ul>	총 정부지원금의 최소 10%이상

1) 성장지원: 경남지역산업진흥원, 특화지원: 경남테크노파크

## 3 추진절차

- 사업 추진절차



※ 추진절차 및 일정은 변동 가능성 있음

## 4 평가 및 선정기준

- 평가방법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 접수 기업의 신청 서류 검토→검증(전담기관)→서면평가(필요시 현장평가 진행)→이의신청→선정기업 확정→기업지원 순으로 진행
  - 접수된 서류와 발표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혜기업 선정
- 지원기업 선정 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최고 평점을 득한 기업 순으로 선정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
  - 신청한 지원 금액은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평가항목(안)

구 분		내 용	배 점
선정 기준	사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목표의 명확성</li> <li>• 사업 필요성, 시급성 등</li> </ul>	20
	지원내용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내용, 범위</li> <li>• 사업 추진일정의 구체성</li> <li>• 사업 내용과 예산편성의 연관성, 적절성</li> </ul>	30
	수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및 사업화 역량</li> <li>• 수출 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li> </ul>	30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 매출증대 가능성 등</li> <li>• 지원 연계 및 성장성(연속 지원 기업 대상)</li> </ul>	20

**5** 지원 신청 방법 및 추진 일정

- 신청기간 : 2025. 7. 14.(월) ~ 2025. 7. 25.(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시스템 활용 필수 ※이메일, 오프라인 제출 시 평가제외
- 제출처 : 경남TP 누리집(<http://www.gntp.or.kr>) > 지원사업 > 지원사업신청
  - 접수 신청 전 경남TP 누리집 회원가입 필요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신청 필요
- 필수 제출서류
  -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접수 시 첨부 문서로 등록)으로 제출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기준
-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공통서류 (필수)	1.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신청 프로그램이 1개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서는 통합하여 1부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프로그램별 수행하고자 하는 아이템, 과제명이 상이할 경우 분할하여 제출 가능)		서식 1
	3. 사업자등록증명원(홈텍스)		홈텍스출력본
	4. 최근 3년간 기업 재무제표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홈텍스출력본
	5.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홈텍스)		홈텍스출력본
	6. 각종 동의서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개인(기업)정보처리동의서, 수혜이력 확인서)		붙임 1~3
	7. 사업비 예산 견적서 각 1부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컨설팅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 기업 사업자등록증(업종, 업태 확인용) 1부 (개인(전문가) 활용 경우 학위, 경력이 기재된 프로필)</li> </ul>	사본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 기업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전문가 활용의 경우 제외)</li> </ul>	사본

## 6

## 지원 제외 대상

구 분	제외 대상
신청자격	① 공고일 기준 마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입주 및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 -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중 물류업, 금융업, 보험업, 통관업, 수출입도매업, 청소용역업, 의료기관, 지원행정기관, 여행 및 기타 업종의 경우 신청 불가
	② 마산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직전 5개년도 지원금액 합이 5억원 이상
	③ 부도, 폐업 또는 휴업 중인 경우
적정성	④ 신청과제의 내용이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복성	⑤ 신청 과제가 경남진흥원 및 타기관의 기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된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⑥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⑦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지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기타	⑧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7

## 사업운영 관련규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자유무역지역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성과평가 관리지침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8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 점수는 공개되지 않음
-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업의 책임임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중복임이 밝혀져 재단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 미지급 및 재단이 지급한 지원금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함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 부정행위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협약 기간 내 지급 요청되지 않은 사업비는 지원되지 않음
- 선정평가에 의하여 지원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종료 후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매출액증명, 수출실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재무제표 등)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전담 및 지원기관의 판단에 따름
-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경남지역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며, 특화지원 프로그램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함.

## 9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및 문의처

구분	소 속	담 당 자	연 락 처	이 메 일
성장지원	경남지역산업진흥원	이명성 선임	055-259-3404	lms@riia.or.kr
특화지원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김정효 연구원	055-259-3636	kjh9279@gntp.or.kr

지원분야	지원내용	결과물 (협약시 상세안내 예정)
특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 및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 컨설팅 비용지원</li> <li>•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지원</li> <li>• 국내·외 특허 침해 및 선행기술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 출원 및 등록 증빙</li> <li>• 특허 컨설팅 보고서 등</li> </ul>
홍보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현황, 제품의 스펙/사용처/세부설명 등이 명시된 홍보물</li> <li>• 기획, 도안, 촬영, 인쇄, 제본 등의 제작 비용</li> <li>• 홍보물 활용처 구체적 명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결과물 등</li> </ul>
마케팅,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 투자, 마케팅, 신규시장 판로확보를 위한 애로해소 등 마케팅, 컨설팅 지원 (바이어 현황 보고서, 시장조사보고서 등 보고서 제출)</li> <li>• 붙임.2 전문가 활용산정기준에 따라 사업비 예산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보고서</li> <li>• 상담일지 등</li> </ul>
특화품목 R&D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R&amp;D 계획서 작성 전문가 활용 지원</li> <li>• 정부 R&amp;D 과제 수주를 위한 과제기획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 결과</li> <li>• 기획보고서 등</li> </ul>
장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인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li> <li>※ 경남TP 보유장비 사용료 지원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 결과물</li> <li>• 결과보고서 등</li> </ul>

□ 전문가 활용비 산정기준

(닥터FTZ 비용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기재할 필요 없음)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비고
전문가 활용비	1급	책임급 이상	120,000원이내/시간	■ 최대 4시간 이하/평일
	2급	선임급	100,000원이내/시간	
	3급	원급 이하	80,000이내/시간	

○ 전문가 자격기준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
국공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6급 이하 9급 이상 직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직급		
기업체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10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5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연구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고교졸업 후 동일 기술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 소유자
	고교졸업 후 동일 기술 분야에서 17년 이상 근무한 경력 소유자	고교졸업 후 동일 기술 분야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소유자	
전문직분야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 및 3년 이상 경력자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 및 2년 이상 경력자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 및 1년 이상 경력자